

# 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CONTENTS

## 목 차

요 약 / 1

---

I. 2009년 美 무역장벽보고서 개황 / 5

---

II.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7

---

III. 평가 및 시사점 / 26

---

## 요 약

- 200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장벽 포괄적으로 제시
  - 조사 대상국은 58개국, EU, 대만, 홍콩 및 SACU(남부 아프리카 관세동맹) 등으로, 수입정책, 표준/인증, 서비스, 투자 장벽 등 총 10개 카테고리 무역투자장벽에 대해 조사
  - 국별 양자 통상 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 초점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2008년 대비 2009년 對韓 무역장벽보고서는 농수산물 고관세 등 단골 이슈에 대한 부연설명을 가감한 것이 주를 이루나, 2008년 미측 요구가 관철되어 진전된 사항과 미 업계에서 새로 발굴한 무역투자장벽도 적시
  - 주요 진전사항 : 쇠고기 수입개방, 이동통신사업자 WIPI 탑재 의무 폐지 등
  - 신규 무역투자장벽 : 가공 유기농식품 인증 도입, 이중 포장 제품 내부 패키지 라벨 의무화, 한국 정부 VOIP 교체 장비 조달시 ARIA 기술 장비 의무화, IPVT 콘텐츠 쿼터 도입 가능성 등
  
- 전반적으로 對韓 무역장벽 보고서에 적시된 이슈 대부분은 한미 FTA를 통해 커버된 바, 신규 통상 압력의 단초로 해석되기엔 무리
  - 그러나, 이제까지 공식적으로는 거론된 바 없는 자동차 교역 역조 문제를 한미 FTA 협정 비준의 단서로 달아, 이 문제 해결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됨.
  
- 한편, 새로 USTR 대표로 지명된 Ron Kirk는 NTE 보고서에 적시된 무역장벽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다자간 혹은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WTO 제소 등을 통해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

**【2009년 對韓 무역장벽 보고서 요약】**

카테고리	주요 내용
수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수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 부과(농산물 53.5%)</li> <li>○ 관세할당(TRQ) 및 조정관세를 통해 수입 농산물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있는데, 관세할당 초과 관세는 매우 높은 수준</li> <li>○ 소다회에 대해서는 8% 관세 유지</li> <li>○ 쌀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을 통해 미국산 쌀의 한국시장 접근 개선</li> </ul>
표준, 테스트, 라벨링 및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첨가물 승인 절차, 미국 내 시험 및 인증기관 시험 결과 불인정</li> <li>○ 기능성 화장품 관련 규제 완화 추세(성분 함유량 제출 면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러나, 식약청 검역원 현장실사를 조건으로 자가 인증을 허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비용 및 시간적 부담</li> </ul> </li> <li>○ 쇠고기 관련, 08.4월 한·미 양국간 합의 및 08.6월 양국 업계간 상업적 양해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현황 설명 및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의지</li> <li>○ 미국산 가금류에 대한 지역화 개념 채택, LMO법 시행,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의 빈번한 변경, 유통업자에 대한 USA NOP 인증서 불인정, 유기가공식품의 GMO 사용 또는 검출금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이중포장 제품의 내포장 제품 표시기준 등 현황 설명</li> <li>○ 통신표준 관련, 기술 중립적인 정책 추진 및 미 방송통신기술·서비스를 차별하고 교역을 제한하는 강제 표준 설정이나 특정 기술 활용 요구 참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용 단말기 WIPI 탑재 의무화 요건 폐지 결정 높이 평가</li> </ul> </li> </ul>
정부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기관 인터넷 전화(VOIP) 조달시 ARIA 탑재 의무화 관련, 한국 정부가 널리 사용되는 국제표준 대신 국내표준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업체가 정부조달시장에서 배제될 것에 강한 우려</li> </ul> </li> </ul>
산업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을 통한 한국 업체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산업은행 민영화 설명</li> </ul>

분 야	주요 내용
지적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로의 저작권 보호 책임 일원화 및 문화체육관광부 내 저작권보호팀 창설, 사법집행권한의 부여 등 저작권 집행활동 강화 동향 설명</li> <li>○ 기술적 보호조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 불법복제품의 온라인 유통, 불법복제 DVD의 가두판매, 의약품 자료 보호, 특허침해 품목의 시판 허가 방지를 위한 식약청 및 특허청간 의견 조율 미흡 문제 제기</li> </ul>
서비스 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쿼터 제한,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한국어 더빙 및 지역광고 제한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에 대한 위성방송 서비스 직접 제공 제한, 별정통신 통신망 접근 권리 제한, IPTV 면허요건에 콘텐츠 쿼터 적용 등도 제기</li> </ul> </li> <li>○ 법률시장 개방 계획, 우정공사·농협·수협 등과 민간 금융기관간 차별적 감독, 금융규제의 투명성 부족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의 규제 및 시장접근 문제 제기</li> <li>○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자에 현지 주재 의무, 규제 제공시 의견 수렴 부족 등 문제 지적</li> </ul>
투자장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우려사항 해소 및 장벽제거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은행 등 공기업 민영화 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등 소개</li> </ul> </li> <li>○ 투자 관련 규제 결정의 투명성 부족, 쌀·보리 경작 관련 외국인 투자 금지, 기간통신사업자 및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 육류도매, 전력사업, 정기간행물 등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 등을 장벽으로 지적</li> </ul>
반경쟁적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위 조사시 당사자가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부족, 조사 절차규칙의 투명성 부족, 동의명령제의 부재 등 지적</li> </ul>

분 야		주요 내용
기타 장벽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동차에 대한 높은 수입관세, 차별적인 배기량 기준 세제, 표준, 규제 투명성 부족, 규제 및 표준 개발시 초기에 이해관계자가 의견 제기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 지적</li> <li>○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주행금지, 관세 및 세금수준, 저당권 설정 불능 문제 등 지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청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주행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중임을 소개</li> </ul> </li> </ul>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약가 및 급여 변경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한국정부 노력 평가</li> <li>○약가 적정화방안 실시에 따른 다중적인 약가인하, 약가 및 급여 관련 적법절차 및 투명성 부족, 의약품 업계의 비윤리적 영업 관행 관련 공정위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필요성 등 지적</li> <li>○치료재료 재평가 제도 실시에 있어 업계의 참여 보장, 중복적인 형식테스트·재등록절차 문제, 신의료기술 안정성 및 유효성 평가 관련 투명성 및 업계의 참여기회 부족 등 지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 제·개정 및 규제 제도에 있어 투명성 부족, 행정절차법상 불충분한 입법예고기간(20일) 및 제출의견의 미반영 문제 지적</li> <li>○08.7월 시행된 개정 주세법이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만 적용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 소개</li> </ul>

자료원 : 2009 USTR NTE 보고서, 외통부 2009년도 NTE 보고서 한국관련 주요 내용

## I. 2009년 美 무역장벽보고서 개황

### □ 2009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의의

- 2009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이하 NTE 보고서로 약칭)는 1974 무역법(Trade Act of 1974), 1988 美중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등에 의거, 美 무역대표부(USTR)가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대체로 전년 보고서를 기초로 업데이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장벽들을 포괄적으로 제시
  - 국별 양자 통상 현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향후 조사 대상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 초점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새로 USTR 대표로 지명된 Ron Kirk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 협정의 이행에 주력하여 NTE 보고서에서 지목된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갈 방침으로, 다자간 혹은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미 업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테스트 및 인증 요건, 수입제품에 대한 등록 및 검사 요건, 지적권 보호 미흡, 쇠고기나 농산물 등에 대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수입금지 조치, 수출 보조금 및 통신시장 내 외국기업 참여 제한 조치 해소 등이 대표적 대상
    - ※ 지난 12월 19일 USTR은 중국의 유명브랜드정책(Famous Brands programs)을 수출보조금 및 산업보호 정책의 이유로 WTO에 양자간 협의 요청. 양자간 협의 진행(60일), 미타결시 WTO패널절차 진행
  - 국별로 지목된 무역장벽에 우선순위를 정해, 사안이 심각한 순서로 대응해 나갈 계획

□ 조사 대상 및 범위

- 조사 대상국은 교역량을 기준으로 58개 국가, EU, 대만, 홍콩 및 SACU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부 아프리카 관세 동맹)으로 제한
- 조사 범위는 아래와 같이 분류된 10개 카테고리 무역장벽에 초점
  - 수입 정책, 표준/테스트/라벨링/인증,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권 보호 상태, 서비스 장벽, 투자 장벽, 반경쟁 관행, e-교역 저해 무역장벽, 기타 장벽(부패 등)
  - 2008년부터는 NTE 보고서 내에 온실가스저감기술(GHGIRT; greenhouse gas intensity reducing technology) 수출 관련 무역장벽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기술관련 재화 및 서비스 교역 활성화 추진
    - 2005년 에너지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은 USTR이 미 국무부가 2006년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Report to Congress on Developing Country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and Climate Change Technology Deployment)에서 거명한 25개 개발도상국에 대해 연례적으로 온실가스저감기술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을 발굴 보고한 후 이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 협상을 추진토록 지시
    - 2006년과 2007년까지 USTR은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NTE 보고서의 일부로 포함

## II.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 2008년과 2009년 내용 비교

- “단골” 이슈에 대한 부연설명 가감이 주를 이룸.
  - 농수산물에 대한 고관세, 기능성 식품이나 유기농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라벨링 규정, 지적권 보호 강화 필요성, 외투 제한 서비스/투자 장벽 등이 대표적인 단골 메뉴
  - 2007년부터 對韓 보고서 분량은 14페이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2005년 37페이지, 2006년 25페이지에 비해 현저히 감소된 수준
    - \* 對중국 보고서는 56페이지에 달함.
  - 한국 시장의 개방화 수준이 높아져 미 업계의 긍정적인 시각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미국 측의 요구가 관철되어 2008년 중 개선된 사항이나, 미 업계에서 신규 장벽으로 지목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도 존재
  - 주요 개선 내용
    - 미측 요구를 받아들여, 2007년 도입된 냉장고 에너지 효율기준에서 규정한 “initiate defrost” 테스트를 국제적으로 공인된 테스트 ISO15502 기준으로 대체
    - 對韓 무역장벽보고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해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8년부터 수입이 재개된 점과 조류 독감 발발시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발병지역으로만 제한하는 “regionalization” 개념을 채택한 것에 주목
    - 2008년 12월,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2009년 4월 1일자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WIPI 탑재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외국산 단말기 도입에 물꼬를 틔.

- 배기가스 기준 충족 인증 시스템 개정안 도입으로, 외국 자동차 제조업들이 한국 내 테스트나 한국 규제 담당관의 입회하에 치러지는 테스트 없이도 제조업체 자체 테스트 데이터만 제출하면 인증 절차 완료

- 주요 신규 장벽 내용

- 2009년 12월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 농무부 유기농인증(NOP)이 한국 기준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을 경우 한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나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역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
- 2008년 10월 한국 식약청은 식품 라벨 기준 개정안의 일부로 이중포장 제품의 내부 패키지 라벨 의무화를 제안하였는데, 발효 시 추가 비용 부담
- 2008년 10월, 강화 성분(enhanced ingredients)을 주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 조작 라벨링 요건 확대를 제안하였는데, 미 정부는 동 요건이 불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과도 무관하다며 우려 표명
- 한국정부의 VOIP 교체 프로젝트 추진시, 한국에만 존재하는 암호화 표준 (ARIA) 기술 포함 장비를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어 우려
- 2008년 7월 한국 정부는 신규 의료기기에 대해 보전(reimbursement) 자격을 결정짓는 헬쓰 케어 기술 평가 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시스템 기준 잦대 및 방법에 있어서의 투명성 미흡 등을 지적
- 실시간 IPTV에 대해 콘텐츠 쿼터 도입 가능성

□ 2009년 對韓 무역장벽 세부 내용

○ 교역 전반

- 2008년 미국의 對韓 상품 무역적자는 133억 달러로, 2007년 129억 달러에 비해 4억 달러 증가. 2008년 미국의 對韓 상품 수출은 348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0.5% 증가(미국의 7대 수출국)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對美 상품 수출은 4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

- 국방 및 정부 조달을 제외한 미국의 對韓 민간 서비스 수출은 2007년 기준 127억 달러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對美 수출은 66억 달러 기록
- 미국의 對韓 FDI는 2007년 기준 272억 달러로 전년 246억 달러에 비해 증가. 미국의 對韓 투자 분야는 주로 제조업, 은행, 금융/보험 분야에 집중

#### ○ 한미 FTA 협상

- 한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협정에 서명하였는데, 양국 의회 비준 및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시 16년 만에 미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상업적으로 중요한 협정이 될 것으로 기대
  - USITC는 한국의 관세 및 TRQ(tariff-rate quotas; 저율관세 의무수입물량) 인하만으로도 GDP 120억 달러, 연간 대한 수출액이 10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양국 간 경제적 관계 뿐 만 아니라, 전략 지정학(geostrategic) 동맹관계를 결속하는데도 기여할 전망
- 북 아시아 지역 최초 미국과 FTA 체결국으로 동 지역 내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에 모델로 사용 가능
- 그러나, 자동차 교역을 포함한 KORUS FTA 관련 우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

#### ○ 수입 정책

- WTO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평균 실행 관세율(MFN applied tariff rate)은 12.6%임.(UR 협상시 한국의 관세 상한선은 94.5%)
  - 농산물 53.5%, 비농산물 6.5%
- 한국 정부는 고부가 농수산물에 대해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과일, 견과류 및 신선한 야채, 녹말, 땅콩, 땅콩 버터 및 다양한 야채 오일, 주스, 잼, 맥주 및 일부 유제품에 대해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

- 사과, 쇠고기, 일부 치즈제품, 일부 생산, 포도 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허브 티, 생식용 포도, 및 다양한 오렌지류에 대해 35% 이상의 관세 부과
- 한국 내 생산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체리, 증류주, 냉동 감자 튀김, 으깬 감자, 페퍼로니, 가공/으깬 감자 등이 대표적
- TRQ를 적용하고 있는데, TRQ 이내(in-quota) 관세는 0에 가까울 만큼 미미하지만, TRQ 초과(over-quota) 관세는 매우 높은 수준
  - 꿀 243%, 분유 176%, 보리 324%, 맥주맥 513%, 팥콩 630%
- 한국은 일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조정관세(adjustment tariffs)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8년 기준, 한국은 15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을 갱신하면서 이중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한국은 제지, 완구, 철강, 가구, 농업 장비, 건설 장비 및 IT 제품(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에 대한 관세를 철폐
- 화학제품에 대한 관세는 0%, 5.5% 혹은 6.5% 등 3개로 제품에 따라 차등시켰으나 소다회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8% 관세를 부과
-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양허 관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일부 인조 섬유 및 원사에 대해서는 30%, 다수의 섬유 및 이불, 베개 등 인공 및 기타 제품에 대해 30%, 대부분의 의류 제품에 35% 관세 부과

○ 쌀

- US 협상시 한국은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 허용의 대가로 수입쌀 관세화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으나, 2004년 말을 기점으로 만료
- 2005년 4월, MMA 10년 연장에 성공함에 따라 한국의 쌀 수입량 킬로그램은 2005년 225,575톤에서 2014년 408,698톤으로 증가 예정

- 한국은 중국, 태국, 호주산 쌀에 대해 국가별 할당 의무(CSQ: country specific quota)를 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부터는 2014년까지 매년 적어도 50,076톤의 쌀을 수입하기로 동의
  - 밥상용 쌀(table rice)도 MMA 할당량에 포함됨으로써 시장접근권의 질 또한 개선되었는데, 전체 할당량에서 밥상용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0%에서 2010년 30%로 증가 예정

○ 표준/테스트/라벨링/인증

①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샘플링, 검사, 테스트 및 인증)

- 일부 표준 및 기술 규제, 적합성 평가 절차가 까다롭고 수입품에 불리. 일례로 한국 식약청은 식품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범위를 좁게 분류하고 있어, 승인을 받기가 어려움. 아울러, 혼합 비율이 변경되거나 원료 성분 일부를 대체할 경우 이를 신제품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OECD 국가의 기준과 상이
- 한국 법에 따르면, 안전 테스트 및 인증은 적합한 테스트 기기와 자격 있는 테스트 인력을 갖춘 국내 소재 비영리 지정 기관을 통해서만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국 수출 기업에 불리
- 수입산 기능성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시행하는 수입품 검토(import review)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동 협회로부터 마케팅 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중복적 성격
  - 미국을 비롯한 수입국들이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식약청은 수입업체들이 더 이상 각 성분에 대한 실제 함유량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공표
  - 한국 식약청 검역원으로부터의 현장실사(audit)에 동의할 경우 제조업체가 한국 제품 기준을 충족한다고 자가 인증(self-certify)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비용 및 소요시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2008년 10월 한국 정부는 WTO 무역장벽위원회(TBT 위원회)에 안전한 것으로 증명된 성분을 내포한 기능성 화장품 일부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과정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통보
- 2007년 미국 냉장고 제조업체들은 한국 냉장고 에너지 효율 기준에서 규정한 "initiate defrost" 테스트는 한국산 냉장고의 전력 소비량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 정부는 2008년 4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 ISO 15502로 대체함으로써 이를 시정

## ②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가이드라인 합치 프로토콜에 합의. 수출 재개 이후 한국은 멕시코, 캐나다, 일본 다음으로 4번째로 큰 미국 쇠고기 시장으로 부상했는데, 미국 정부는 쇠고기 교역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 계획
  - 특정위험물질(SRMs; Specified Risk Material)만 제거된다면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해짐
  - 2008년 6월 20일에는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양측이 상업적 양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도달
  - 미국 수출업체 요청으로 미 농무부는 자발적인 품질 시스템 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시행. 월령 30개월 미만 소 안전을 평가
- 2008년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류독감 발발시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발병지역으로만 제한하는 "regionalization" 개념 채택
- 생물학적 다양성 협약(CBP;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에 의거, 2008년 1월 부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법이 발효되어, 모든 유전자조작 곡물에 대한 환경위험평가가 의무화됨.
  - 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서류 요건을 과학에 기반, 투명하며 간소화 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

## ③ 기능성 식품

- 한국 식약청은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미국 수출업체에 추가 비용 발생
  - 스티커 등 비영구적 라벨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영구 라벨만을 허용해, 라벨링 요건이 변경될 경우 전체 제품의 라벨 교체 필요

## ④ 유기농 식품

- 한국 식약청은 미국 정부의 지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 농무부 인정기관이 발급한 유기농 인증(NOP : National Organic Program)을 생산, 제조, 가공업자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고, 중개업자(handler)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음.
- 한국 식약청은 가공 식품 내 유전자 조작 성분이 포함되었을 경우, 유기농으로 표기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이는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가이드라인에서 유기농 생산은 최종 생산물이 아니라 확인가능하고 규제된 프로세스임을 강조한 것과 배치되는 바 미국 정부는 프로세스 기준을 택할 것을 촉구
- 2009년 12월 부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가공 유기농 식품에 대해 미 농무부 유기농인증(NOP)이 한국 기준과 동등하다고 여기지 않을 경우 한국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을 의무화할 예정이나, 세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역에 장애로 작용할 우려

## ⑤ 통신 표준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 측에 기술 중립성을 준수하는 한편, 교역을 제한하고 미국 통신 및 방송기술/서비스 공급업체에게 차별적인 강제 표준 설정이나 특정 기술 활용 요구를 삼가하도록 촉구
- 신설된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2009년 4월 1일부로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핸드셋 내 설치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외국 핸드셋 수출업체에 시장 개방 확대

⑥ 라벨링 의무 조건

-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의 불투명하고 까다로운 표시 의무 조건이 다양한 제품의 한국시장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
  - 일례로, 미국 증류수 업체는 자주 변경되는 현행 라벨링 요건 준수 비용에 우려를 표명.(라벨링 요건의 일부로, 수입업체의 주소나 보관 방법 등을 명기토록 한 것도 부담으로 지적)
- 2008년 10월 한국 식약청은 식품 라벨 기준 개정안의 일부로 이중 포장 제품 내, 내부 패키지 라벨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동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우려
- 2007년 유전자 조작 옥수수, 콩, 대두, 면, 카놀라 등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전자 조작 라벨링 요건을 의무화 한데 이어, 한국 식약청은 2008년 10월, 강화 성분(enhanced ingredients)을 주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 조작 라벨링 요건 확대 제안
  - 동 안에 따르면, 식품 첨가제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강화된 성분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최종 제품 내 검출 가능한 DNA나 외계 단백질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 변형 작물)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함.
  - 미국 정부는 금번 제안된 라벨링 요건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 및 안전과도 무관하다며 우려를 표명해 왔음.

⑦ 위험 물질 및 자원 재활용 요건

- 2008년 7월 1일 부로 발효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 순환법에서는 특정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내 위험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동 제품들에 대한 재활용 요건을 설정.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

## ○ 정부 조달

- 한국은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임. 그러나 협정 양허기관 중 지방정부기관(sub-central)이나 정부소유기업(government enterprises)의 건설 서비스 분야 최소양허하한금액(threshold) 수준은 한국이 미국의 3배에 달하는 2천 2백만 달러로 높게 책정되어 있음.
- 2008년 12월 한국 정부는 VOIP로 유선 전화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장기 계획을 발표. 교체기 동안 보안 유지를 위해 각 정부 기관들이 암호화 가능 시스템을 조달할 것을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 그러나, 한국에만 적용되는 암호화 표준(ARIA) 기술을 포함한 장비를 구매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우려 제기
  - 한국 정부는 미국이 제기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달 계획 이행 시기를 연기한 상태

## ○ 수출 보조금

-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 한국 정부가 과거 반도체 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 미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은 민간 기관과 같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어 온 바, 미국 업계는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 및 투자 관행이 한국 산업계의 과잉설비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고 불공정 요소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
- 현 정부가 산업은행을 2단계에 걸쳐 민영화하는 한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한 것에 대해, 동 안이 실제 실행될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은행 및 유사 정부 소유 금융 기관의 대출 관행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재권 보호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기술적보호조치(TPM; 암호와 아이디 등을 사용한 후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조치)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 강화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예정
- 아울러, 대학 내 서적 복제, 불법 복제 DVD 가두 판매 및 소비재 복제 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

① 저작권법

- 2008년 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관련 책임 권한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폐지된 정보통신부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관련 책임권한을 이양 받음.
- 2007년 6월 말 발효된 저작권 개정법은 저작권 보유자 요구가 있을 경우 P2P 네트워크 운영자에게도 침해 사본의 유통을 막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인터넷 복제 방지 및 이행 메커니즘 강화 노력
  -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술적보호조치(TPM)에 관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지 않으며, 우회 툴의 제작 및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임. 아울러,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의 책임 및 책임의 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
- 미국 업계는 지속적으로 저작권자가 삭제조치(takedown)를 요청하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
- 미국 정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인터넷 환경 속에 잠재적으로 내재하는 위험을 감안하여 한국 저작권법을 재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

② 지재권 집행

- 현 한국 정부는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선언. 이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보호팀을 부내 신설하고, 저작권법 및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가 필터링 기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 저작권법 보호팀은 타 부처 내 관련 에이전시들과 동 의무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
  -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작권법 보호팀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2008년 검찰에서는 지재권 집행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지재권 침해 콘텐츠 업로딩, 웹하드 저장 사이트 운영업자 및 복제 필름 제작자 대한 기소 강화
  -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개봉 전 영화나 음악 등을 대용량으로 업로딩 한 톱 사이트(topsite) 운영업체에 대한 단속에 특히 유념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불법복제 DVD 가두 판매 단속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

### ③ 데이터 보호

- 한국식약청은 2005년 3월 말, PMS 단계에 있는 오리지널 약품이 염(salt) 사용 등을 통해 조금만 변경되어도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라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
- 그러나 법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미국 제약 업계는 향후 한국식약청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

### ④ 특허, 상표권 및 영업 비밀

- 한국 특허청은 제약, 농화학, 수의학 제품 일부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요청을 수용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였으나 식약청과 특허청간의 의견 조율 미흡으로 특허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마케팅을 승인할 가능성 상존

- 불성실한(in bad faith) 등록 신청은 검사관이 거절토록 허용함으로써 외국 상표권 등록권자의 허가 없이 국내에서 해당 상표권을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상표권 취소를 위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여 (미국 업체가) 조치를 추진할 의지가 감퇴
  - 특히 특허청이 상표권 검사 및 스크리닝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이뤄진 소위 "sleeper" 상표권에 대해서는 대응 절차에 문제점이 다수 노정
- 불공정 경쟁 및 영업 비밀 법을 통해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수준의 영업 비밀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
  - 화학물질, 애완동물 사료,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외국 기업들은 등록이나 인증 과정에서 규정한대로 포뮬라 등을 제공할 경우 일부 정부 관료가 기업의 영업 비밀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않아 한국 경쟁사나 관련 협회로 기밀이 누출되기도 한다고 지적

○ 서비스 장벽

① 스크린 및 방송 쿼터

- 2006년 7월 1일부터 한국 정부는 한국 영화 방영 의무 일수를 연간 73일로 축소
-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 라디오 방송, IP TV에 대해서도 외국 방송물 쿼터제를 운영
  - 전체적으로 외국 프로그램은 지상파나 라디오 방송의 20%를 넘을 수 없으며, 분기별로 케이블 혹은 위성 방송 시간의 50% 이내로 제한
  - 이러한 쿼터제 내에서 연간 방송 시간 쿼터는 추가적으로 외국 영화 방영시간을 제한하는데, 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에서는 총 방영 시간의 75%로 제한됨.
  - 외국 애니메이션은 지상파 방송 시간의 55%,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의 65% 이내로 편성해야 하고, 외국 음악은 40% 내에서 편성 가능

- 분기 기준으로, 특정 국가산 콘텐츠는 전체 외국산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에 배정된 총 쿼터의 60% 이내로 제한

## ② 더빙(voice-over) 및 지역 광고 제한

-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외국 재송신 채널에 대한 더빙 및 지역 광고 제한 규정을 내포. 이로 인해 미국 업계에서는 동 채널의 수익성이 저하된다고 이의 제기

## ③ 법률 서비스

- 현재까지는 한국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만이 외국 법을 포함한 법률 자문 제공 가능. 외국서 자격증을 득한 변호사는 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도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한국 변호사와 파트너십을 맺거나 이들을 고용하는 것도 불가
- 한국 정부는 단계적으로 법률 시장을 개방할 예정으로, 1단계는 외국 법률 컨설턴트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외국계 로펌이 한국 내 사무실을 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
- 추가적인 개방 절차를 통해, 외국 변호사나 로펌과 한국 변호사 간 파트너십 체결 등 이슈를 해결할 예정

## ④ 보험 및 은행

- 우체국, 농협 및 수협은 금융 감독 위원회나 금감원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바, 외국 보험사에 비해 유리한 고지 점령
- 미국 금융 회사들은 규제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메커니즘 모색. 한국 금융 감독 구조 내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소가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적절히 외국 보험사의 우려가 종식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남.

- 보험 고객의 불만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는 여타 규제 기관에서는 외국 보험사의 시장 내 입지 구축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규제 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는 국내 대형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구매토록 소비자를 편향 유도
- 규제 제정시 외국 금융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지 및 의견 수렴 기간과 모호한 행정적 가이드스를 개선할 필요
- 한국 정부는 2007년 6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법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경간 금융 서비스 거래 내 잠재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의 조항 시행시기를 2009년 2월 4일로 연장

#### ⑤ 통신

-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자가 한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서는 최종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
- 아래서 살펴볼 투자 제한 조치와 현지 주재 요구는 경제적으로 이치에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조치는 외국 위성 서비스 제공업체의 한국 시장 활동을 제한
- 아울러 한국 정부는 시설이 없는 통신 캐리어가 통신 네트워크(인터커넥션 관련)에 접근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제한
- 2008년 신설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07년 국회에서 통과된 IPTV 규제법 관련 시행령을 공포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정부는 투명성 및 적법절차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 예정
  - 미국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는 라이선싱 관련 요건 일부 (실시간 IPTV에 대해 콘텐츠 쿼터 신청)가 외국 기업에 장벽으로 작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

## ○ 투자 장벽

-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외국인 총 지분, 외국인 개인소유한도, 정부 및 기업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거나 철폐.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금융 기관이 발행한 단기 금융상품의 외국인 구매를 자유화하였지만, 여전히 미국 투자자들은 투자 관련 규제 결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에 대해 지적
- 통신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벽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기반 통신 운영업체에 대한 외국 지분 상한선을 49%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상파 TV 운영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허용되지 않음.
  - 케이블 TV 관련 시스템 운영업체나 네트워크 운영업체 및 프로그램 제공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49%로 제한
  - 위성 방송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33%로 제한되며, 외국 위성 재송신 채널은 총 운영 채널수의 20%에 국한
- 통신 분야 외에도 쌀이나 보리 경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류 도매업에 대한 50% 외국인 지분 제한 부과
- 뉴스 발간매체에 대해서는 30%, 기타 정기간행물 발간 업체에 대해서는 50%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 현 정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은행 등 국채 운영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현 글로벌 금융 위기 사태가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아울러, 우리금융지주의 지분 중 6%를 팔아 정부 지분 비중을 73%로 낮춤.
- 경제자유구역(FEZ) 지정을 통해 세제 혜택, 무관세 수입, 유연한 노동 규제 적용 및 외국인 생활 조건 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반경쟁적 관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및 규제 개혁과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갈수록 역할 비중 증대
- 강력한 수사권과 처벌권 보유 외에 공정거래 위원회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위반사실이 발각되었을 경우 중형의 행정 벌금 부과 가능
- 많은 수의 미국 기업들은 공정거래 위원회 수사시, 검토 및 반대 증거에 대해 응답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제기한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청문회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
- 아울러, 공정거래 위원회가 상호 합의하에 응답 업체들과 합의 계약 (settlement agreement)을 체결할 수 있는 동의명령제가 부재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 표명

○ 기타 장벽

① 규제 개혁 및 투명성

- 규제 제정이나 규제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
- 한국의 행정절차법은 규제 초안에 대해 최소 20일의 공시 기간을 두고 코멘트를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기간은 불충분함.
- 아울러, 수렴된 코멘트도 최종 법안 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아무런 부연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② 자동차

-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내 접근성 확대는 미국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 중의 하나

- 한국은 8%의 관세와 엔진사이즈에 기반한 차별적 세지, 표준, 규제 불투명성, 규제나 표준 제정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틀이 미흡한 것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
- 2008년 7월 30일 부로 이행된 배기가스 기준 충족 인증 시스템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한국 내 테스트나 한국 규제 담당관의 입회 하에 외국에서 테스트를 치루지 않고도 제조업체 자체 테스트 데이터 제출하면 인증절차 완료
  - 오프로드(off-road) 장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가 적용

### ③ 이륜자동차

- 지난 몇 년간 이륜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소음 기준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많이 해소된 것은 사실이나, 고속도로 통행금지, 높은 관세 및 세금, 등록증 부재, 오토바이를 담보로 오토바이 구매 파이낸싱 불가 등 몇몇 시장 접근과 관련된 문제가 미결 상태로 남아 있음.

### ④ 의약품

- 2006년 도입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내 비용 통제 조치 하에서 수입 혁신 약제품도 여러 번에 걸쳐 가격이 삭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채택 이후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이전에 보전(reimbursement) 승인된 약제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의약품 가격 책정 및 보전 변경과 관련하여 코멘트 기간을 연장하기도 하고 규제 결정에 사용된 방법에 대해 제한적인 설명을 제공
- 미국 정부는 의약품 보전과 관련된 결정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하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및 출시를 방해하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

⑤ 헬스케어 시스템 내 비즈니스 관행

- 미국 기업들은 한국 헬스케어 시스템 내 비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
-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국내 및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 9월 이러한 관행에 대한 수사에 월 착수, 2007년 첫 번째 그룹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표(4개 한국 기업과 1개 다국적 기업이 거명)
- 2009년 2월 2차 수사 결과에 대한 결과가 공표되었는데, 2개 한국 기업과 5개 다국적 기업이 거명)
- 미국 정부는 도매상과 유통업체의 부적절한 관행을 철폐하고, 미국 기업이 한국 내 약가 산정 및 약가보전 가이드라인 도입, 규제 전반에 대해 예측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 예정

⑥ 의료 기기

- 가격 책정 및 보전 결정 절차 등과 관련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어, 한국 의료기기 시장 진출에 애로
- 한국 내 제품 테스트 의무와 원산국 등록 의무 또한 의료 시장 진출을 저해
- 한국은 현재 신규 의료 기기에 대한 보전 비율 상한선을 출시된 유사 제품의 90%로 두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중 가격 일원화(single price) 정책(특정 기능 카테고리 내 모든 제품에 대해 일원화된 가격으로 보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 미국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투명하게 신규 시스템 도입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
- 한국 내 테스트 기관서 테스트를 받도록 의무화 한 것은 국제적으로 프로세스에 기반한 품질관리 접근법에 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용 이중부담과 출시 지연을 초래. 국내 테스트 연구소와 함께 테스트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누출될 우려도 제기

- 한국 식약청이 원산국 외의 제조시설로 이동되는 모든 제품에 재등록을 의무화한 것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원산지 변경 통보 관행과는 상반
  - 미국 정부는 기존 등록증으로 다수의 시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재등록 없이 변경 통보만을 허용토록 요구
- 2008년 7월 한국 정부는 신규 의료기기에 대해 보전 자격을 결정짓는 헬스케어 기술 평가 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 미국 업계는 시스템 기준 잣대 및 방법에 있어 투명성 부족과 이해관계자들이 시스템 개발 및 조율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우려 제기

### ⑦ 증류주

- 2008년 7월 1일부로 한국 주세법이 개정되어 특정 형태의 증류주 및 희석주를 포함한 일부 “전통주(traditional liquors)”에 대한 세금을 50% 감축. 미국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경쟁관계에 놓인 수입 술이 “전통주” 카테고리에 맞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우려
- 1997년 미국은 한국의 차별적인 주세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였는데 WTO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미국편을 들어줘, 한국 정부는 WTO에 합치되게 주세를 개정한 바 있음.
  - 미국 정부에서는 금번 한국 주세 개정안을 통해 한국 술에 대한 감축된 세율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였는데, 한국 정부는 “전통주”에 해당되는 술은 소규모 생산자가 생산하는 지정된 전통주로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전체 한국 주류시장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응답
  - 미국 정부는 동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

### III. 평가 및 시사점

- 對韓 보고서 내 지적된 무역장벽 대부분은 한미 FTA 협정을 통해 상당부분 커버된 바, 신규 통상압력의 단초로 해석되기엔 무리
  - 농산물(쌀 제외) 고관세 철폐나 지적권 보호, 자동차 부문에 있어 지적된 사항 중 상당부분은 기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 반영된 상태
  - 한미 FTA 협정에서는 서비스/투자 부문에 있어서도 미측 요구 조건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일부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등에 대한 요건 완화
  
- 한미 FTA 협정 비준, 자동차 교역 역조 이슈 선결 단서 달아
  - 올해 3월 2일 발간한 2009년도 통상정책의제 보고서와 유사한 맥락에서, 자동차 무역에 대한 우려를 포함, 한·미 FTA를 둘러싼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적시한 바, 어떠한 형태로든 자동차 교역 역조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 표시
    - 자동차 교역 이슈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으로, 현 행정부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음.
  - 4월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간 회담 내용이나 클린턴 국무장관 방한시 양국의 경제, 동맹 관계에 있어 한미 FTA 협정이 중요하다는 발언 등을 감안할 때, 한미 FTA 비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자동차 교역 문제 해결에 따른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됨.
  
- WTO 제소 등을 통한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
  - Ron Kirk USTR 대표는 NTE 보고서에서 지적된 무역장벽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자간 혹은 양자간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부시 행정부 시절과 비교 WTO 제소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참고로, 부시 정부에서는 WTO 제소 건수가 연평균 3건에 불과했던데 반해, 클린턴 정부에서는 이의 4배에 육박하는 11건에 달했음.

##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 Global Issue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09-003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시사점	2009.2
09-004	美 경기부양법인 분석 및 활용전략	2009.2
09-005	러시아 CIS 수출환경변화와 진출확대방안	2009.3

### ● Global Business Report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 자동차시장 미리보기	2009.2
09-002	중동의 5대 비즈니스 유망 분야	2009.2
09-003	한-호주, 뉴질랜드 BT산업 협력방안	2009.3
09-004	새롭게 바뀌는 일본의 수입 인증제도	2009.3
09-005	불황기 중국시장, 소비트렌드를 읽어라	2009.3
09-006	일본 소비재 유망상품 및 수출방안	2009.3
09-007	새롭게 주목받는 美 흑인시장 - 분석 및 마케팅 전략-	2009.3
09-008	아프리카 전력시장 ON - 전력산업 현황과 진출방안 -	2009.3
09-009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 2,3선 도시 소비트렌드	2009.3

### ● KOTRA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09-004	2009년 지역별 수출유망상품	2009.2
09-005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2009.2
09-006	2009 외국인 투자환경 만족도 조사	2009.3
09-007	러시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시장동향	2009.3
09-008	CEO·HR 마네-ジャーのための 核心労働判例集	2009.3

### ● 설명회자료

번호	제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09-005	TRADE KOREA 2009 해외시장개척 설명회 및 상담회	2009.2
09-006	TRADE KOREA 2009 해외 마케팅 핸드북	2009.2
09-007	2009 아세안 유망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9.2
09-008	미·중·일 그린 비즈니스를 잡아라	2009.4

작성자

◆ 워싱턴 KBC 이정선 과장

Global Issue Report 09-007

**2009 美 USTR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발행인 | 조환익  
편집인 | 곽동운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9년 4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globalwindow.org](http://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